



삼척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87호 2019. 9. 20.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14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 2
- 삼척시 고시 제11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3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794호 어업권 포기 및 어업면허처분 공고 ----- 6
- 삼척시 공고 제796호 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7
- 삼척시 공고 제801호 일거리 발굴 아이디어 공모 ----- 11
- 삼척시 공고 제803호 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4
- 삼척시 공고 제804호 성내읍성 어울림誌 마을기자단 모집공고 ----- 27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9-114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삼척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16.

삼척시장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예산액	기정액	증 △ 감	증감률
합 계	727,876,153	685,128,375	42,747,778	6.2%
일반회계	671,917,580	632,516,648	39,400,932	6.2%
특별회계	55,958,573	52,611,727	3,346,846	6.4%
상수도사업	23,569,448	23,364,308	205,140	0.9%
하수도사업	6,483,759	6,083,759	400,000	6.6%
주택사업	65,592	65,592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6,673,745	14,883,826	1,789,919	12.0%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1,348,216	655,000	693,216	105.8%
의료급여기금	1,205,780	1,132,533	73,247	6.5%
자활기금운영	1,411,446	1,390,460	20,986	1.5%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1,323,223	1,320,618	2,605	0.2%
주차장	1,027,012	949,349	77,663	8.2%
임대아파트관리운영	2,850,352	2,766,282	84,070	3.0%

삼척시 고시 제2019 - 11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20.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평2길 37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9. 2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421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평2길 37	20190920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적용 (대평길분기)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 119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길 121-47	20190920		20090626	행정구역명 사용
3	강원도 삼척시 마평동 104	강원도 삼척시 회강길 207 (마평동)	20190920	건물신축	20090626	오십천내지형지물 명칭활용(도경동, 오사동,마평동연결)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교시일	사유	도로명교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계	3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421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평2길 37	20190920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 방식적용 (대평길분기)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 119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길 121-47	20190920		20090626	행정구역명 사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마평동 104	강원도 삼척시 화강길 207 (마평동)	20190920	건물신축	20090626	오십천내지정지물명칭활용 (도경동, 오사동, 마평동연결)	

삼척시 공고 제2019 - 794호

어업권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 공고

2019/2020년 삼척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한 어업권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사항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삼척시장

□ 어업권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

어업의 명칭	어업권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현황				어장의 위치	어업권자	비고
	구분	면허번호	면허기간	면적			
해조류양식	어업권 포기	삼척 해조류양식 제99-5호	2009. 9. 28 ~ 2019. 9. 27	1.5ha	용화리 지선	임영길	재개발
	어업면허 처분	삼척 해조류양식 제2019-1호	2019. 9. 28 ~ 2029. 9. 27	1.5ha	용화리 지선		
복합양식	어업권 포기	삼척 복합양식 제99-2호	2009. 9. 17 ~ 2019. 9. 16	3.0ha	초곡리 지선	이상훈	재개발
	어업면허 처분	삼척 복합양식 제2019-1호	2019. 9. 17 ~ 2029. 9. 16	3.0ha	초곡리 지선		

삼척시 공고 제2019- 796호

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삼 척 시 장

1. 제안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삼척시청 기획감사실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우편번호 : 25914

전화 : 033-570-3712, FAX : 033-570-313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폐지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폐지 규칙안

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폐지 규칙안

인 적 사 항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의 견 내 용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삼척시 공고 제2019 - 801호

지역자원을 이용한 특특튀는 새로운 일거리 발굴 아이디어 공모

2019년 9월 11일

삼척시장

일거리 발굴 아이디어 공모

삼척시가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일거리를 제안 받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특특하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 2019. 07. 11.(목) ~ 2019. 09. 30.(월)까지 일거리 발굴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 합니다.

※ 당초 마감 2019.09.10일에서 기간을 연장함

- * 우수제안자에게는 표창 및 부상금 지급
- * 동일한 내용은 우선 접수된 제안을 수상자로 결정하며,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변경될 수 있음.

응모자격은

- ✓ 삼척시민, 삼척시 소재 학교 및 기업체 근무자 누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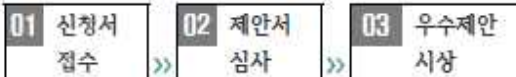
공모 주제는

- ✓ 창직(job creation), 새로운 일거리가 답이다
(창직 : 새로운 직종을 만드는 활동)

제안 분야는

- ✓ SAM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가능한 공공분야 일거리
- ✓ 취미/놀이, 디자인예술 등 활동을 통한 창업 가능한 일거리
- ✓ 기타, 창의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일거리

제안 접수 및 심사절차



- 제출기관 : 삼척시청 (전략사업과)
- ✓ 제안 신청 (제안서 첨부)
 - 우 편 :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전략사업과(033-570-4046)
 - ※ 2019.09.30(월) 18:00 접수시 유효(우편은 소인 날인분)
 - F A X : (033) 570-3186
 - E-mail : lthwan9@korea.kr
 - ※ 이메일을 통한 접수는 원본으로 불
 - 방 문 : 삼척시청 전략사업과 도시재생1팀
 - ※ 최대 2개까지 가능, 회관서 제출 후 반드시 확인 전화 요청
- 심사기관 :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별도 구성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이메일 또는 우편 및 방문접수

2단계 제안서 심사

- 시 관계자,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로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 :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창의성, 경제성 등
 - ☞ 사업화 가능성 및 일자리로써 파급효과 큰 것
 - ☞ 창의적이고 경제적성 검토

3단계 시상

- 심사발표 : 2019.10월초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구분

전체	대상	우수상	장려상
00명 (300만원)	0명 (100만원)	0명 (각 50만원)	0명 (각 10만원)

※ 시상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심사제외 및 유의사항

- 사업내용이 기존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출 건은 심사에서 제외
- 법령상 추진이 곤란하거나 할 수 없는 아이디어
- 타 공모전 수상작으로 판명되거나, 창작이 아닌 모방 혹은 표절로 밝혀진 경우 입상 취소.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시상금 환수조치
- 일반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기타 아이디어로 인정할 수 없는 신청 건
- ✓ 응모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한 제반권리는 삼척시에 귀속.
- 기타 문의사항은 삼척시청 전략사업과(☎033-570-40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금번 공모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중 창업이나 창직을 희망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청서 양식》

일거리 발굴 아이디어공모

접수번호			접수일		
참가자 인적 사항 (대표자)	성명	(서명)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제안명 (명칭)					
구상내용 (간략히 설명 등)					
파급효과 (기대효과)					

응모요강을 준수하고 참가자(본인 또는 공동)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며 응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삼척시장 귀하

신청서 뒷면

응모 신청시 유의사항

- ① 제출된 응모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② 제안 접수 시 제출된 응모작의 모든 자료에 대한 가공, 온·오프라인 상의 출판, 전시, 배포에 대한 권한을 행사 삼척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 작품제출자(원저작권자)가 사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심사 제외 또는 시상 취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과도한 예산수반과 설계반영이 어렵거나 실현가능성이 불가능한 작품
 - ▶ 표절 아이디어 또는 국내·외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작품
 - ▶ 기타 지적재산권 등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 ④ 작품 접수 이후에는 접수 취소가 불가하며, 제출도서 및 서류상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주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관련한 근거서류 및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 접수 작품이 공모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적합한 당선작이 없을 경우, 당선인원이 조정되거나 당선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삼척시 공고 제2019 - 803호

「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삼척시장

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근거조문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나.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23조의2)
- 다.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28조의2)
- 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2)
- 마.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35조)
-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경제과

○ 전화 : 033-570-3366 ○ FAX : 033-570-3140

※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사·공고 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본문 및 제8호 중 “영위하는”을 각각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소요비용”을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중 “영위하는”을 각각 “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영위”를 “운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위하는”을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삼척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따른다.
- ② 삼척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 또는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3조 제2항 전단 중 “사무소의 소재지”를 “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하고

제31조 제2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하고,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이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가 지장(指章) 날인 또는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붙여 삼척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삼척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意的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5조 앞에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를 삭제한다.

제36조 앞에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를 삽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u>영위하는</u>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장육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에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p> <p>4. ~ 7. (생략)</p> <p>8.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u>영위하는</u>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삼척시장에 등록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p> <p>9. (생략)</p> <p>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 ② (생략)</p> <p>③ 삼척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 <u>운영하는</u> ----- -----.</p> <p>4. ~ 7. (현행과 같음)</p> <p>8. ----- ----- ----- <u>운영하는</u> ----- -----.</p> <p>9. (현행과 같음)</p> <p>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② 삼척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22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③ (생략)

제23조(상인회 등록 등) ① (생략)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삼척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삼척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② 삼척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 또는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상인회 정관 등) ① -----
-- 필요-----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상인회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무소가 있는 곳-----

③ -----

----- 갖춰 -----

제23조의2(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삼척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따른다.

② 삼척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상인회 또는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의 지원) ①·② (생략)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설>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② (생략)

③ 삼척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설>

제24조(예산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붙여야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삼척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따른다.

② 삼척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갖추어 놓고 -----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2회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삼척시장이 시장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갱신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 (생략)

② 수탁자는 삼척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④ (생략)

<신설>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35조 ~ 제37조 (생략)

<신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삼척시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한다.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안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이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가 지장(指章) 날인 또는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붙여 삼척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삼척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삭제>

제36조 ~ 제38조 (현행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와 같음)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

【붙임 3】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정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意的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8. 6. 12.>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㉑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㉒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 1. 8.>

㉓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1. 8.>

㉔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 8.>

[전문개정 2010. 6. 8.]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상인 및 건축물·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붙임 4】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 2019-804호]

성내읍성 어울림誌 마을기자단 모집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성내동 및 대학로 지역주민의 이야기와 새로운 소식(이야기) 등을 모아서 전하고 기록하고자 성내읍성 어울림誌 마을기자단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기간 : 2019.09.17.(화) ~ 2019.09.30.(월)

☞ 모집인원 : 7명 이내

☞ 모집대상 : 현장취재가 가능하고, 글쓰기와 사진 촬영에 열정이 있는 자
※ 성내동 거주 주민, 대학로 상인 우선 배정

☞ 제출서류

- 지원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1부
- 자기소개 또는 성내동 소식등 자을 원고 A4 1매 내외
- 글쓰기 공모 또는 경력 1부(해당자 한함)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이메일 : parkar91@korea.kr - FAX : 570-3186
- 우편접수 :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전략사업과 도시재생팀

☞ 심사발표 : 2019.10.04. 개별공지 및 홈페이지 공고(홍※동)

☞ 활동혜택

- 임명장, 기자증 제작 수여
- 마을신문 채택 원고료 및 회의수당 등 지급

《문의처》 삼척시청 전략사업과 033-570-4034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033-576-0327

《지원서 양식》

마을기자단 지원서

접수번호			접수일		
인적사항	성명	(서명)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경력 및 자격사항	별도 서식 가능				
개인정보 활용동의	<p>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p> <p><개인정보 수집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수집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확인절차 - 고지사항 전달, 불만 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채용결과 등의 안내 - 각종 우편물 발생 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 채용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 정보 확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각종 경력 및 자격증 등 ○ 개인정보 보유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사실 확인 등)가 제한됨으로 채용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한 신청은 자발적인 신청으로 서명을 같음하며 지원자 (본인 또는 공동)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며 응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삼척시장 귀하